

비상임감사 직위 심사 기준

구분	직무수행요건
기본 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공직유관단체 임원으로서의 공직윤리의식과 책임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직자로서의 국가관, 청렴성, 도덕성, 준법성과 실천능력 ○ 공직유관단체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과 태도 ○ 대규모 조직의 인적·물적 자원 운영 경험 □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개혁 역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영 혁신의 의지와 실천역량 ○ 조직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비전 제시 역량
고유 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감사업무 수행 역량과 전략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감사업무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○ 청렴도 개선, 감사기능 활성화 및 회사 발전유도 전략 □ 회사 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공기관 자회사에 대한 이해와 소양 ○ 회사 업무에 대한 발전적 비전 제시 역량 □ 경영여건 분석과 대안 제시 역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영상 개선점 발굴과 정책대안 제시 역량 ○ 장기적 경영여건 분석과 대비 역량

채 용 결 격 사 유

□ LH주거복지정보㈜ 인사규정 제9조 (결격사유)

제9조(채용금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징계에 따라 과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9.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
10.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
11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과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
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